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7

발의연월일: 2020. 7. 21.

발 의 자: 박완주·조오섭·이광재

김경만 · 황운하 · 홍성국

박영순 · 남인순 · 이장섭

강훈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립하여 많은 정부 부처들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였으나,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소재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를 국회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거리 국회 출장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회의 장소) ① 국회는 서울특별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

- ② 국회의 회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 1. 본회의와 다음 각 목의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국회서울의사당에서 한다.
 - 가. 국회운영위원회
 - 나. 법제사법위원회
 - 다. 외교통일위원회
 - 라. 국방위원회
 - 마. 정보위원회
 - 바. 여성가족위원회
 - 사. 유리특별위원회
 - 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회의는 국회세종의사당에서 한다.
 - 가. 정무위원회

- 나. 기획재정위원회
- 다. 교육위원회
- 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마. 행정안전위원회
- 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자. 보건복지위원회
- 차. 환경노동위원회
- 카. 국토교통위원회
- 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3. 제44조의 특별위원회의 회의 장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4.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 장소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회의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세종의사 당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 시설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준공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2(회의 장소) ① 국회는
	서울특별시에 국회서울의사당
	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
	<u>의사당을 둔다.</u>
	② 국회의 회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본회의와 다음 각 목의 위원
	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
	는 국회서울의사당에서 한다.
	<u>가. 국회운영위원회</u>
	<u>나. 법제사법위원회</u>
	다. 외교통일위원회
	라. 국방위원회
	<u>마. 정보위원회</u>
	<u>바. 여성가족위원회</u>
	사. 윤리특별위원회
	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회의
	는 국회세종의사당에서 한다.
	<u>가. 정무위원회</u>
	나. 기획재정위원회
	다. 교육위원회

- <u>라.</u>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u>원회</u>
- 마. 행정안전위원회
- 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
- <u>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u> 업위원회
- 자. 보건복지위원회
- 차. 환경노동위원회
- 카. 국토교통위원회
- 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3. 제44조의 특별위원회의 회의 장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4.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위한위원회의 회의 장소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간 사와 협의하여 회의 장소를 달 리 정할 수 있다.
- ④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 시설을 둘 수 있다.